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0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유용원·백종헌·엄태영

신동욱 · 김은혜 · 이달희

성일종 · 김성원 · 조경태

임이자 • 박대출 • 정성국

박상웅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지휘관이 실시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하지만 현행법은 '폭행, 협박 등'에 대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으나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탓에 군기훈 런 실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사실상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동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기훈련 실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군형법」상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가혹행위)	1 • 2	(생	제62조(가혹행위)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u>징역에 처한다.</u>
<u><신 설></u>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
			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